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45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정의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연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5. 체결된 각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연번 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2.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연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2. 12. 5. 접수 제24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사천시 교통행정과 2022. 12. 5. 접수 C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B은 2020. 3. 18.부터 2022. 9. 9.까지 일본산 의약품 등을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면세를 적용받는 방법으로 세액을 부정감면받았고, 이를 확인한 부산세관장은 2022. 12. 19. B에게 합계 세액 309,511,6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B은 현재까지 이를 일부만 납부하여 2023. 10. 17. 기준 체납세액은 합계 307,761,69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B은 2022. 1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연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연번 2 기재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2. 12. 5. 접수 제244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및 사천시 교통행정과 2022. 12. 5. 접수 C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다. B은 부산세관이 2022. 11. 16. 실시한 압수수색 및 같은 달 21. 실시한 피의사신문 수감 이후 강제징수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의이전등록을 각 마쳐준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B의 어머니로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하고 있는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의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새 남편인 D의 동생 E 및 D의 아들 F이 도와 준 돈으로 피고와 D이 구입한 주택으로 그 명의만 피고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인 B로 해두었던 사실, 이 사건 자동차 역시 피고 및 D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그 명의만 B로 해두었던 사실, 피고가 2022. 9.경 요양보호사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 여러 사유로 B 명의로 해두었던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회복할 필요성을 느껴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의이전등록을 한 사실, 피고는 2012.경 현 남편인 D과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하여 사천에 거주하였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로는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해왔음에 반하여 B은 주로 부산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선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

별지